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후속 보도자료]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귀하

발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고기복 010-2870-0021)

제목: 차별없는 이주인권정책 촉구 전국이주인권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1.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이주민 인권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우리 이주인권진영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이 아닌 '나중에'라는 답변,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 기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는 2025년 7월 9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권중심적인 이주민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고, 또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주아동, 난민, 인도적 체류자, 피구금 이주민, 유학생 등 우리사회가 배제하려는 여러 모양의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정책을 촉구하며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해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고 후속 보도자료를 드리오니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차별없는 사회와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자료
2. 위 기자회견 관련 사진

차별 없는 사회와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주민과 공존, 통합정책을 마련하라!”

- 일시 : 2025년 7월 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 사회 :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 주요발언
 - 모두발언_ 배제가 아닌 통합과 인권 중심의 이주민 정책 :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언1_ 인종차별 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몽(차별
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_ 젠더기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 김혜정(한국이주여
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발언3_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평등한 이주노동
자 정책 :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4_ 계절노동자 제도 전면 개선 : 임선영(이주인권 셋 대표)
 - 발언5_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 구제제도
마련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 발언6_ 난민 정착과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김연주(난민인권
센터 변호사)
 - 발언7_ 단속추방 정책 즉각 중단과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 이영(남
양주외국인복지센터장)
- 기자회견문 낭독_ 김미선(위프렌즈 상임이사)
- 공동주최: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모두 발언]

“민생·경제 우선”은 이주민 통합과 인권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 ‘민생, 경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뒤로 미루겠다는 입장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위기와 민생문제의 본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인구소멸, 지방소멸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통합과 인권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단순한 노동력 공급자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사회 다양성의 핵심 동력입니다.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통합될수록 소비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도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장이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주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중에 경북 구미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23살 이주노동자가 출근 첫날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일 낮 최고기온이 38도였던 사고 현장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 관계당국은 해당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가 안전한 작업장이 모두에게 안전한 작업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주노동자는 뒷전이어야 합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대선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노골화되었고, 광장 시민의 지지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마저 배제하려 하는 현 상황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주민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미루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우선순위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통령실이 주도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통합하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과제여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주민 통합과 인권 보장은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

책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주민이 지역 사회에 잘 통합되면, 그들은 소비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정치적 불안정과 인권 후퇴 논란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주민 정책을 인권 중심으로 전환하고,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국제적 신뢰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이주민은 시민이 아닙니까? 이주민도 시민입니다. 미등록 이주민도 시민이고, 결혼이주민도 시민이고, 유학생도, 난민도 모두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입니다. 시민을 뒤로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민을 배제한 민생, 경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만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민생과 경제 우선순위는 이주민 통합과 인권 보장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발언2]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마련하라!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국사회 구성원이자 가족이며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주여성을 주변적 존재로 밀어내고,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이주민은 265만명으로 여성이 119만명(45%)에 달합니다. 그 중 결혼이주민은 34만명으로 이 중 80%가 여성입니다. 이들을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체류는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 유무와 관계에 의존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귀화 요건이 달라지고,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필기시험을 요구받고 복수 국적취득도 제한됩니다. 이는 결혼이주민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 장치이자 폭력적 관계에서도 이탈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젠더 기반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전국의 이주여성상담소는 고작 10개소에 불과하며, 이는 119만 명이 넘는 이주여성 인구를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 학교 내 차별 등 다양한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신고조차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입국한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들은 젠더기반 폭력피해와 인권침해를 입었으나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정보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 노동자는 농업, 돌봄, 청소, 식당, 모텔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노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조적 차별과 폭력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쟁점이 되며,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한계로 인해 신빙성이 쉽게 부정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며, 변경이 되더라도 지역 제한으로 인해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조차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승급에서 배제됩니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주여성의 존재를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의 동등한 시민이며,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주여성의 체류 안정과 인권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정부는 이주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 합니다.

함께 구호외치겠습니다.

1. 결혼이주민의 체류 안정성 보장하라!
2. 젠더 기반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체류권과 지원체계를 확대하라!
3. 이주여성 노동자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발언3]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평등한 이주노동자 정책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먼저 엇그제 폭염 속에 건설현장에서 돌아가신 스물세살 베트남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이주노동자 폭염 대책 철저하게 마련하고 사업주를 강제하고 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탄핵 이후 지난 6월 3일 치러진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에 현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고용허가제 등 한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제도에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없고 일할 의무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지시 감내하면서 저임금에 장시간 고강도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 열악해도 위험해도 일 힘들어도, 몸이 아픈데 제대로 치료받거나 쉬지 못하고 해도 이런 사업장에서 그만둘 권리가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과 선택할 권리 보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는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강제로 노동 시켜도 된다, 최대한 착취해서 돌려보내도 된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보다는 사업주의 이윤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또 절반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사람 살 수 없는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 살아서 건강 생명 잃는 문제 여전합니다. 이런 노동조건에 일 해도 이주노동자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떼먹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임금체불 신고 하다가 사장이 미등록으로 신고해서 경찰에 잡혀간 이주노동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사업주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하고 있고 사업장 이탈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때문에 이탈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주가 기간 연장 안 해 줘서, 연장해놓고 연장 취소해서, 구직활동 기간 내 알선 못 받아서,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됩니다. 정부는 미등록되는 이주노동자 체류자격이 없다고 해서 단속해서 강제 추방 하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사망까지 하고 있는데도 책임은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깁니다. 법제도 문제가 큰데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종차별적인 강제노동 강요하는 고용허가제가 폐지해서 사업장 변경 자유롭게 하고 권리 보장 되는 노동허가제 실시 요구 계속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무부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등 비자제도들 실시했습니다. 이 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하기 더 어렵고 사업주가 이직 동의 해줘도 출입국이 못하게 합니다. 조선업에서는 기능인력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사업주가 마음대로 계약 기간 정하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다른데 일을 구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법무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브로커 개입과 착취도 심각합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새로 들어선 이재명정부는 역대 정권과 다르기를, 이주노동자의 이런 열악한 현실을 바꿔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멈춰서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답게 자유롭게 일하게 하는 계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도 안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분

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강요하는 법제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노동 사업주 괴롭힘 때문에 고통 받는 ,자살하는 이주노동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폭염에, 산재로 죽어가는 노동자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생기지 않도록 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아니라 체류권 보장해야 합니다. 산재 사망 멈춰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돈 벌여주는 기계로만 생각해서 희생양으로만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차별이 아닌 자유와 평등을 원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해서 데리고 오는 거고 필요한 곳에 일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 도입 역사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나쁜 인식, 법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 차별적인 이주노동 법제도 모두 폐지하고 모든 권리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발언4]

계절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제도 전면 개선 촉구

임선영(이주인권 셋 대표)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착취와 강제노동에 특히 노출되어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계절근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지금, 현실 속에서 노동력 착취의 인신매매 구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절이주노동자들은

- 브로커에 의해 모집되면서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 이탈방지용 이면계약서 등에 서명을 강요받았고,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으며, 화장실 자주 간다고 물 마시는 것도 제지를 받으면서 일 해야했고,
- 비닐하우스 내 판넬조립식 숙소는 창문이 없었고, 냉난방 설비나 선풍기조차 없으며, 농약 냄새가 풍기는 등 비위생적이고 유해한 환경이었으며,
- 여권을 고용주 또는 브로커가 압수하거나 외출 등을 제한 받았습니다.
- 특히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송출비용을 갚는다는 명목 하에 임금을 착취 당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겪는 현실은 '단순한 노동의 고단함'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구조적 착취입니다.

그 구조의 핵심에는 브로커와 민간업체가 개입, 주도하는 송출 시스템, 지자체의 한계 및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 부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심'의 새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민간 브로커를 배제하고,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송출 및 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하라!
- 장시간 중노동과 열악한 주거 상황을 개선하라!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 정부는 응답하라. 지금 당장, 사람을 위한 계절근로 정책으로 전환하라!

[발언5]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이주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이주아동정책이 필요합니다.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아동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활기차고 다채로운 공동체로 발전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주아동들의 기본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헌법 등에서 이미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이 되어가는 이주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아동의 교육권, 건강권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주아동들은 성장에 기본권인 교육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권리주체인 국민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미등록이나 난민신청아동이어서 등의 이유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의 아동의 생존, 발달 보장'(제6조),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제26조와 27조)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 보편적이지 않은 출생통보제, 모든 아동들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 필요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이 출생시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출생통보제는 외국인아동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공공서비스체계가 아동의 기본권을 누락하지 않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장기체류 미등록아동과 가족의 실질적 구제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5년 3.20.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미등록이주아동 구제대책 3년 연장'조치는, 1차 구제대책시행 당시보다 조금은 나아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미등록이주아동 가정이 신청을 주저하였던 부모 1인당 900만원의 범칙금 일시불 납부, 취업과 체류기간에 제한을 두는 부모의 임시체류자격,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대학진학 시 유학생과 동일하게 채우하는 체류환경, 취업 시 받는 비자의 제한, 1차 구제대책시행시보다 현저히 늘어난 심사기간 등은 '미등록이주아동의 합법화'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과 가족에게 여전히 불안정한 체류, 가족이산의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한국인으로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 아동들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이주아동의 구금은 아동학대입니다.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는 해마다 100여명의 아동들이 구금되고, 추방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보호규칙은 이주아동 구금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 부양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외국인보호규칙 4조) 그러다보니 세 살짜리 어린이가 아버지와 함께 구금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동의 구금은 아동학대와 같습니다. 연구조사에서는 구금된 아동들이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증상을 겪는다고 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유엔자유권위원회(2003), 국가인권위원회(2024.6)는 아동구금 금지 법제화를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아동구금금지원칙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아동구금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이주배경청년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전면적인 체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주배경청년들의 사회적 진출이 급격하게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들 청년들의 진입과 정착을 둘러싸고 기쁨과 한숨,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들 이주배경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적 진출과 정착을 위하여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직업적 역량강화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언6]

난민 정착과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김연주(난민인권센터 변호사)

한국사회는 최근 계엄과 권위주의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 변화는 국내 민주주의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장해야 할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새 정부는 권위주의와 폭력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동시에, 같은 위기에 처한 난민과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연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수단, 가자지구 등지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국제분쟁과 인도주의 위기를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충돌이 격화되면서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장기화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수단에서는 군부 쿠데타와 내전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강제이주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극심한 기아로 팔레스타인 주민 대다수는 반복적으로 피난을 떠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예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가 부여한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그간 한국정부는 난민의 시민적 삶을 보장하고 확장하기보다는 권리를 제한·축소하고 쫓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난민들은 한국 정부의 비자정책에 가로막혀 피난처를 찾기 어려워졌으며, 어렵게 도착한 난민들은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공항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고 송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더라도 기본적인 생계와 주거지원이 부재하고, 체류자격도 불안정하여 스스로 떠나거나, 비자발적으로 송환되거나, 장기간의 구금을 견디지 못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의 극소수만이 난민 지위를 얻고 있으며, 이들은 트라우마, 언어·문화의 장벽, 정부 정책 부재, 사회적 시선과 혐오 속에서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 빈곤과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는 가족과 장기간 이별하며 정서적 고립을 겪고, 본국에 남은 가족들은 박해와 가족 해체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차 난민 거부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며, 난민인정을 제한하고, 난민을 추방하며, 신청의 기회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낙인찍고 혐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낮은 난민인정률, 훈련된 심사관 부족,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및 역량 미흡, 공항 등 출입국공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불회부결정 남용 및 법률 지원 접근성 부족,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송환 명령 발부,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취업허가 및 의료지원 부족,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 미보장과 기초서비스 접근 제한 등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난민심사 역량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 통계 공개, 취업·의료·기초생활 지원 확대, 가족결합권 보장 등 실질적 개선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난민이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난민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난민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OECD 난민보호률(약 30%)에 부합하도록 1%대에 불과한 한국의 난민인정률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분쟁지역에서 피난 온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통해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국경에서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송환되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항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공항 밖에 출입국항 난민신청자가 머무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화된 난민심판원 등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에 대해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위헌입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로 운영하며, 난민신청자의 구금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고, 아동구금을 금지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절차를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생계비 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난민신청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마련하고, 난민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의료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남용적 난민신청’의 관점에서 특정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지침을 폐기하고,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노동권 및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육, 사회통합 및 직업교육 등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난민이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삶을 누리고 포용과 환대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난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며, 난민 보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발언기]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이영 (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양성(합법)화의 필요성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 정책에서 양성(합법)화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 ‘노동허가제’ 실시를 하여 선진이민사회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 위법적인 물리적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은 인권침해								
☞ 단속과 자진신고 및 출국 유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 1991년~2025년까지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는 60여 회가 넘는 단속을 예고하고 시행, 자진신고 및 자진 출국에 대해서도 50여 회 실시								
❖ 등록이주민의 신규 미등록 증가는 외국 인력의 총체적 파행적 정책								
☞ 매년 신규 미등록 체류자 발생 : 2024년 신규발생 63,534명 (등록 23,209 명) / 2023년 신규발생 106,330명 (등록 25,607명) / 2022년 신규발생 73, 291명 (등록 31,926명)								
☞ 과도한 행정적 규제 장벽이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사업장이동 제한 등)								
★ 사업장 변경 신청자								
업종	사업장 변경 신청자		사업장 변경 신청자					
			①근로계약 만료/해지		②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③상해 등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제조업	44,177	47,951	40,487	42,346	3,671	5,594	19	11
건설업	2,068	2,850	1,642	1,888	425	962	1	0
농축산업	9,583	9,588	8,421	8,237	1,156	1,349	6	2
서비스업	127	250	121	217	6	33	0	0
어업	4,669	5,894	4,156	4,923	507	969	6	2
계	60,624	66,533	54,827	57,611	5,765	8,907	32	15
★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과 구직기간 초과자								
업종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 초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신청자 중 구직기간(3개월) 초과 외국인근로자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제조업	1,714	1,867	1,272	1,278	772	712	591	996
건설업	347	367	167	120	184	155	61	92
농축산업	873	754	395	462	430	421	678	925
서비스업	5	6	10	10	6	7	10	24
어업	475	619	689	653	266	187	559	768
계	3,414	3,613	2,533	2,523	1,658	1,482	1,899	2,805

표 6-1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총체류자	불법체류 외국인				불체율
			계	등록	단기	거소	
2020년		2,036,075	392,196	108,665	281,857	1,674	19.3%
2021년		1,956,781	388,700	125,022	262,251	1,427	19.9%
2022년		2,245,912	411,270	138,013	269,532	3,725	18.3%
2023년		2,507,584	423,675	137,954	283,687	2,034	16.9%
2024년		2,650,783	397,522	134,580	260,818	2,124	15.0%
전년대비증감		5.7%	-6.2%	-2.4%	-8.1%	-4.4%	-

표 6-6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2024.12.31. 현재, 단위 : 명)

계	유학 (D-2)	일반연수 (D-4)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동거 (F-1)	거주 (F-2)	방문취업 (H-2)	기타
134,580	9,419	24,002	51,698	9,526	4,228	1,485	2,784	31,438

표 6-5 연도별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증감
등록외국인		1,145,540	1,093,891	1,189,585	1,348,626	1,488,353	(10.4%)
합법체류		1,036,875	968,869	1,051,572	1,210,672	1,353,773	(11.8%)
불법체류		108,665	125,022	138,013	137,954	134,580	(-2.4%)
불법체류율		9.5%	11.4%	11.6%	10.2%	9.0%	-

표 7-1 연도별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고발	기타
2022년	98,350	10,196	28,585	2,067	1,478	56,024
2023년	134,083	31,932	40,538	1,922	1,880	57,811
2024년	139,727	35,124	44,151	1,931	1,737	56,784

※ 기타 :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등

1. 미등록체류 적법절차 미 준수에 의한 무법적 단속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법무부훈령 제 00000호, 2022. 8. 1. 일부개정] 위반 :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을 <u>무 제시</u> 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u>무 설명 (단속 절차 이후 시행)</u>
☞	반말과 과도한 수갑(제 25조 사용 시기 및 사용 시 유의사항 등 미 적용) 사용, 사업장과 사생활의 기속사 <u>무 고지</u>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u>동의</u> 를 받아야 한다)로 진입(제 3조 7: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 무시)
☞	<u>공무의 적법 절차 무시</u> : 사업장 내 이주노동자 단속(수갑) 후 차량에서 비자유부 확인 (<u>신원 확인 후 등록 이주노동자 풀어줌</u>)
☞	차량에 법무부 공무에 대한 <u>무 표식</u>
☞	제 3조 8 단속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무시 : <u>심야 단속 강행</u>
☞	<u>단속 복장의 미착용</u> : 제 2절 실시단계 제 7조(단속복장 및 증표) ① 단속반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외국인 등이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	제 13조의 2 '단속된 외국인을 5시간 이상 단속차량에 보호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u>장시간 보호방지 의무 미 이행</u>
☞	<u>제 21조 통역 미 제공</u> : 강제퇴거에 중점을 두고 고충 해소(권리 구제 및 건강 등) 및 생활 안내에 따른 통역 미 제공

2. 미등록체류 단속과 이에 대한 선 구제대책

❖	<u>법무부 출입국 강제퇴거의 문제점</u> : 법무부 출입국은 한해 적게는 2만 명에서 3만 명을 강제퇴거 함에 있어 강제퇴거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 구제를 보다는 강제추방에 중점을 둬으로써 갑작스럽게 당한 단속으로 인한 임금체불, 퇴직금 정산을 하지 못하고 추방 (3만 명의 경우 임금체불 100만원 추정 시 300억 원)
❖	<u>보호외국인 권리구제</u> :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 대부분은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구제 절차가 차단(출입국 공무원은 사업주의 의견만 반영)되어 있고, 설혹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구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이 이루어짐
❖	<u>보호외국인의 민원 해소</u> :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로 인해 10명 사망 이후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u>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상주를 통해 민원 해소</u>

일시보호해제 문제점 : 구금의 장기화

- 2025년 4월 00일 00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단속됨
- 1996년부터 단속 당시까지 한 공장에서 장기근속으로 퇴직금 지급 희망
- 사업주는 장기근속 사실을 불인정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위로금으로 200만원으로 해결하려 함
-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증빙 가능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 단, 2012년~2018년까지 통장거래내역 증빙이 필요한 상황
- 법무부 출입국은 1,000만 원 이상 임금체불 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와야 한다고 함
- 고용부의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은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이후 당 출입국에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고 법무부 출입국의 '외국인보호위원회' 안건으로 이후 통보됨 (전에는 당 출입국 소장이 결정)

3.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위원회' : 효율성 제고 (구금의 장기화)

- ❖ 신설된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 제 66조의 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외국인보호위원 중 이주현장을 중심으로 한 민간 인권분야 위원은 배제로 인해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과 권익 약화
-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목적성과 상치되는 운영 :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공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보호외국인 신속한 퇴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상근이 아닌 주 1회 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3주이며 이를 2주 연장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호외국인은 강제구금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운영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기피하게 됨.

4. 법무부 한시적 구제대책의 제도

- ❖ 심사기간의 문제점 : 법무부구제대책의 신청 시점 이후 장기적인 심사기간(초소 10개월에서 최대 14개월 소용)에 따른 초소한의 생계유지의 위협(식료와 거주비 등)과 아동양육의 저해(아동의 정서적 불안) 등
- ❖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취업 단절과 단속의 두려움 : 심사 중에는 취업허가가 아닌 상태임으로 취업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는 경우 단속이 되면 강제 퇴거됨 (단, 이를 인지한 센터에서 200만원의 범칙금을 통해 해소)
- ❖ 신속한 심사기간과 심사기간 동안 취업 체류 허가 : 기존에 심사를 위한 창구 개설과 함께 신속한 심사(3개월 이내)와 함께 심사기간 인도적 체류를 허가(G-비자)를 하여 생계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

- 지난 2025년 3월 20일 법무부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

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시적 조치로 실시해 온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허가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발표

-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말까지 총 2,713명을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이 가운데 미등록 아동·청소년은 1,205명, 부모는 1,508명
-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체 19세 이하 미등록 아동·청소년은 6,169명 (이주 시민사회단체는 대략 최소 2만~3만 명으로 파악)

법무부는 구제방안에 따른 체류허가 신청이 ① 체류민원실을 통해 접수되면 ② 서류심사, ③ 실태조사, ④ 이후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범심사를 거쳐 ⑤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신청 시기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10개월~14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

사례

- 필리핀 국적의 미등록체류 이주가정은 2024년 10월 7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제도를 신청
- 2024년 11월 28일 조사과의 가정방문 인터뷰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절차 진행에 대한 연락을 기다릴 것을 안내 받음
- 아동의 아버지는 취업허가 절차 없이 근로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벌금 1,800만원의 마련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남양주시에 위치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로를 함
- 7개월이 경과되던 2025년 4월 중순, 법무부의 미등록체류자 단속을 위한 사업장 불시 방문으로 관할 출입국에 인계되는 상황이 발생
- 당시 아버지의 진술에 의하면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법무부 현장 담당자에게 보여주었으나,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였다고 함
- 아동의 아버지는 사범과 조사 후 출입국관리법 제18조1항 위반을 사유로 벌금 및 과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고, 완납 후 풀려날 수 있게 되었음

- ❖ **심사기간의 문제점** : 법무부구제대책의 신청 시점 이후 장기적인 심사기간(초소 10개월에서 최대 14개월 소요)에 따른 초소한의 생계유지의 위협(식료와 거주비 등)과 아동양육의 저해(아동의 정서적 불안) 등
- ❖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취업 단절과 단속의 두려움** : 심사 중에는 취업허가가 아닌 상태임으로 취업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는 경우 단속이 되면 강

제 퇴거됨 (단, 이를 인지한 센터에서 200만원의 범칙금을 통해 해소)
❖ 신속한 심사기간과 심사기간 동안 취업 체류 허가 : 기존에 심사를 위한 창구 개설과 함께 신속한 심사(3개월 이내)와 함께 심사기간 인도적 체류를 허가(G-비자)를 하여 생계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

[공동성명서]

- 21대 국민주권정부의 이주민 정책 기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이주민 인권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우리 이주인권진영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이 아닌 ‘나중에’라는 답변,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 기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또한 번의 절망을 안겼다.

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사회에 만연하고, 인종차별을 당연시하며 조장하는 정치인들이 활개 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현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특히 인종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법률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대통령의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는 발언은, 이주민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인권국가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진정으로 ‘민생’과 ‘통합’을 이야기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강력한 추진 의지를 즉각 천명해야 한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공존과 상생의 가치로 차별과 혐오를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 이제는 전환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으로 이주민 정책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있을 것을 기대했던 이주인권단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장을 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은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사회적 배제에 노출되어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사

회통합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마석 등지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이 대규모로 투입되어, 이주노동자들의 자택과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문을 부수는 등 사실상 가택수사에 준하는 폭력적 단속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조차 없이 토끼몰이식으로 무더기 연행이 이뤄졌고, 어린 자녀를 둔 가족 구성원까지 끌려가거나, 숙소까지 침입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었다. 단속을 피해 숨은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인권침해 피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입국 외국인보호위원회 등 관련 행정기관이 투명한 절차와 공개적 심의 없이 밀실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주민의 생명과 권리가 걸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인권단체의 의견이 배제된 채 폐쇄적으로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반인권적, 폭력적 단속과 밀실행정은 국제 인권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단속추방 일변도 정책은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사회적 배제와 인권침해를 심화시킬 뿐이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는 인권 원칙에 따라,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민 없는 민생, 이주노동자 없는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국민주권정부는 단속·추방 중심의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과 통합의 관점에서 이주민 정책의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과 인권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제도, 더 이상 형식적이어서 안 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 포함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제 실시와 보육·교육·의료권 보장을 법제화하며, 체류 사유로 아동 구금을 금지해야 한다.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구제제도가 여전히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주아동은 한국 사회의 미래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지원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주민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 한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체계적으

로 뒷받침해야 한다.

외국인력정책 개선 촉구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종속시키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구조적 인권침해와 차별을 초래해왔다. 이에 우리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ILO 강제노동금지협약에 부합하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모든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다운 노동과 권리 실현의 출발점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법적 근거 마련, 근로조건과 인권보호 강화, 브로커 개입 차단,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가입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이라는 명분 아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권리와 처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계절노동자제도 하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피해자 등은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으로 현행 제도는 정부의 전폭적인 농어촌 지원정책을 통한 개선을 필요로 함을 말하고 있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정부의 전폭적 농어촌 지원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가사돌봄노동자 정책 역시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저임금·저질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노동권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도했던 필리핀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대 운운하고 있다.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가 아닌 민간시장 확대와 저임금 구조 고착으로 이어지는 현 정책은, 돌봄노동의 질적 개선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외국인력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 계절노동자 제도의 인권 중심 전면 개선 및 법적·제도적 보호 강화, 가사돌봄노동자 등 외국인력에 대한 노동권 보장과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 등 외국인력정책 전반에서 인권, 평등,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체계 마련하라. 국민주권정부는 외국인력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두가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배제하지 마라

국민주권정부는 30.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그러나 코로나 당시 정부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만 지원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러한 배제는 국민주권정부의 원칙과 상충한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주인권진영은 우리는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권중심 통합적 이주민정책을 수립하여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도함으로써 빛의 혁명이 부여한 사회대개혁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1대 국민주권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 우리는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해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배제가 아닌 통합과 인권 중심 이주노동정책, 이주민 정책 수립하라
- 단속·추방 중심 정책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하고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 구제제도 마련하라
- 난민 정착과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젠더기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7월 9일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살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

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당경기도당,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 노무법인약속,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경기도본부, 민주노동당수원옹호산화성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 지구인의정류장,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난민주도단체 한옥커즈, 난민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이주인권 셋,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